

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
정비 지원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승용 의원 발의】



2019. 9. 2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57호로 2019년 9월 19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)
- 나.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사업대상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라. 보조금 지원 및 관리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9. 9. 11. ~ 9. 16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
 - 안 제3조~제5조에서는 지원대상, 사업대상 등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
 -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

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
2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

제4조(등록)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3

자동차관리법

제67조(사업자단체의 설립)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(이하 "조합등"이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(發起)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
5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
6.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

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·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